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5
----------	------

제출연월일: 2017. 6.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 제·개정,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및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
- 나. 조례 25건의 공통 정비사항을 일괄개정 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 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 다. 실효성·조화성 정립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 16건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없음
-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해촉해야”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사망·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유발명의 승계)”를 “(개인발명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을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통·반장의 해촉)”을 “(통·반장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반장을 해촉”을 “통·반장의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망 또는 통·반”을 “통·반”으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 제26조의4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활동지원급여

제9조의 제목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을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1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활동지원급여

**제11조(「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가”로 한다.

제9조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2조(「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가”로 한다.

**제13조(「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질병·기타”를 “질병·기타”로, “해촉하여야”를 “위촉을 해제하여야”로 한다.

**제15조(「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으로 한다.

**제19조(「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를 “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0조(「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1조(「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23조(「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호 중 “사망·질병·출장”을 “질병·출장”으로 한다.

**제24조(「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25조(「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사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사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중구의회 의장이”를 “중구의회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촉해제)”를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해제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해야 한다.</p> <p>1. <u>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u></p> <p>2. (생략)</p> <p>3. <u>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u></p> <p>4. ~ 7. (생략)</p>	<p>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p> <p>-----</p> <p>-----</p> <p>--- <u>위원의 위촉을 해제해야</u> --.</p> <p>&lt;삭제&gt;</p> <p>2. (현행과 같음)</p> <p>3. ----- <u>위촉 해제를</u> ---</p> <p>4. ~ 7.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실)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 (위원장의 직무) -----</p> <p>----- <u>총괄한</u></p> <p><u>다.</u> -----</p> <p>-----</p> <p>-----.</p>
<p>제7조 (해촉) 구청장은 <u>위원의 사망·질병</u>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p>제7조 (해촉) ----- <u>질병</u> -----</p> <p>-----</p> <p>-----</p> <p>-----.</p>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총무과)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4. ~ 8.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총무과)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⑥ (생략)</p> <p>⑦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질병 -----                      -----                      -----.</p> <p>⑧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총무과)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개인발명</u>”----- -----.</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 (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생 략)</p> <p>2. <u>자유발명</u>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p> <p>3. 4. (생 략)</p>	<p>제5조 (업무의 관장)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개인발명</u>-----</p> <p>3. 4. (현행과 같음)</p>
<p>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p> <p>② (생 략)</p>	<p>제20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u>개인발명</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p> <p>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u>의장</u>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23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p> <p>① ----- <u>디자인</u>----- -----.</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u>의장권</u>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p>	<p>②----- ----- ----- <u>디자인권</u>-----.</p>

○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자치행정과)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 ----- ----- ----- 통·반장의 위촉을 해제-----.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임기 중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3. ----- 통·반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평생교육과)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등의 제한)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4. 감염병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민원지적과)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 제36조----- ----- -----.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민원지적과)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 ----- -----.

○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u>활동보조서비스</u> ”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3. “ <u>활동지원급여</u> ”-----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범위)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하는 장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범위)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활동보조서비스</u>	3. <u>활동지원급여</u>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활동보조서비스</u>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 ----- ----- <u>활동지원급여</u>----- -----.</p>
<p>제13조(사업) 자립생활센터는 부령 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6. <u>활동보조서비스</u></p>	<p>제13조(사업)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활동지원급여</u></p>
<p>7. ~ 10. (생략)</p>	<p>7. ~ 10.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성청소년과)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u>구의회 의장</u>이 추천하는 의원 1명</p> <p>2. · 3. (생략)</p>	<p>제6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구의회</u>가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⑤ (생략)</p> <p>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장의 직무) ----- ----- <u>총괄하며</u>----- ----- ----- -----.</p>
---	---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청소년과)

현행	개정안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② (생략)</p>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되, 구 아동·여성폭력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u>구의회 의장이</u> 추천한 구의원 2명</p> <p>2. ~ 6. (생략)</p> <p>④ (생략)</p>	<p>③ ----- ----- ----- ----- -----.</p> <p>1. <u>구의회가</u>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경제일자리과)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담배사업법 시행규칙</u> 」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담배사업법 시행규칙</u> 」 제7조제4항----- ----- ----- ----- -----.

○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일자리과)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 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 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 <u>질병·기타</u> ----- ----- 위촉을 해 제하여야 --.

○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경제일자리과)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6조제2항-----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1. ----- -----

<p>“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p>	<p>----- 제5조-----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 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 다.</p>	<p>제3조(적용범위) ----- 법 제5조----- -----.</p>
<p>제4조(허가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 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 -----.</p>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환경미화과)

현행	개정안
<p>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 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p>	<p>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 -----.</p>
<p>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 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현장이 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 ----- 제12조제3항--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미화과)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건설과)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도로법」 제91조----- ----- -----.</p>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건설과)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p>	<p>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 ----- -----.</p> <p>1.·2. (현행과 같음)</p> <p>3. -----</p>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4. ~ 7. (생략)

-----  
 -----  
 -----  
 ----- 국토교통부령 -----  
 -----  
 -----  
 -----.

4. ~ 7.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현행	개정안
<u>울산광역시 중구</u>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u>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u>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u>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지구</u>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현행	개정안
<p>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p>
<p>2. ~ 7. (생략)</p> <p>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p> <p>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u>자연재해위험지구</u>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5조(지형도면 고시) <u>자연재해위험지구</u>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그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에게 고시해야 한다.</p>	<p>2. ~ 7. (현행과 같음)</p> <p>8. -----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 -----.</p> <p>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p> <p>제5조(지형도면 고시)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p>	<p>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 ----- ----- -----.</p>
<p>1.·2. (생 략) 3. <u>자연재해위험지구</u>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p>	<p>1.·2. (현행과 같음) 3.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 -----</p>
<p>4.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p>	<p>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 ----- -----.</p>
<p>1.·2. (생 략) 3. <u>자연재해위험지구</u>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p>	<p>1.·2. (현행과 같음) 3.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 -----</p>
<p>4. (생 략) ② (생 략)</p>	<p>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③ (생략) ④ 중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33명 이하로 구성하여 “중구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3. (생략) ⑤·⑥ (생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u>건설기술진흥법</u> 」----- ----- ----- 2.·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도시과)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① (생략)	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u>사망·질병·출장</u>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 4. (생략)	① ----- ----- ----- ----- 1. <u>질병·출장</u> ----- ----- ----- 2. ~ 4.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과)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운용)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제2조(설치·운용) ----- ----- 「지방자치법」 제126조----- ----- -----.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사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디자인건축과)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이 되며, 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제3호에 따라 위촉한다.	제6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생략) 3. 자문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11명 이내 가. (생략) 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다. (생략) ③·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중구의회 ----- ----- 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위촉 해제할 -----. 1. ~ 4. (현행과 같음)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1.1.4.>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 7. 국방부
- 8. 행정자치부
- 9. 문화체육관광부
- 10. 농림축산식품부
- 11. 산업통상자원부
- 12. 보건복지부
- 13. 환경부
- 14. 고용노동부
- 15. 여성가족부
- 16. 국토교통부
-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조치
-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3.8.6.>
- ⑥ 삭제 <2013.8.6.>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건설기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b>의안 번호</b>	<b>1375</b>	<b>[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b> <b>심사보고서</b>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7. 3.(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7. 11.(화)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가. 제안이유

- 1) 상위법령 제·개정, 현실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확보
- 2) 조례 25건의 공통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
  - 자유발명 ⇒ 개인발명(안 제5조)
  - 전염병 ⇒ 감염병
  -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안 제10조)
  - 국토해양부령 ⇒ 국토교통부령(안 제19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 제20조)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안 제22조)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해축 ⇒ 위축 해제, 통할 ⇒ 총괄, 사망·질병 ⇒ 질병
  - 중구의회 의장이 ⇒ 중구의회가

다. 근거법규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발명진흥법」, 「주민등록법」
- 2) 「장애인복지법」, 「정부조직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5건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4. 심사결과 : 수정가결**